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63 발의연월일: 2023. 8. 10.

발 의 자:이태규·이명수·서병수

김희곤 • 김예지 • 이인선

조경태 • 이종성 • 권은희

권명호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아교육법」에는 원장·원감·교사 등 유치원 교원에게 유아생활지도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유치원 교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은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협 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 호자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 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호자는 법 제21조의3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 내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 ①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 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 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 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법 제21조의3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 내에서 교원과 유

치원의전문적인판단을존중하고교육활동과돌봄활동이원활히이루어질수 있도록적극 협력하여야한다.